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국대기실 운영 및 송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1국에 1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을 증원하고,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84명(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및 자동출입국심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8명(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을 각각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입국재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3명, 7급 6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출국대기실운영팀 및 직급상향 조정한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5월 31일에서 2026년 8월 10일까지로 단축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회부심사팀을 신설하며,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6급→5급), 법무부 소속기관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 ~ 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본문 중 “전자여행허가센터장 및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을 “전자여행허가센터장, 출국대기실운영팀장 및 난민회부심사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을 “송환집행과장과 출국대기실운영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㉞ 난민회부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3.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대기장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급식, 피복 등 기본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난민법」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

별표 4의2의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하부조직란을 다음과 같이 한

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지원국(총무과·심사지원과·조사과·감식과·정보분석과·정보관리과·보안관리과), 심사1국(입국재심1과, 송환집행과 ,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심사4과·심사5과·심사6과·심사7과·심사8과·심사9과·심사10과· 난민회부심사팀), 심사2국(입국재심2과, 심사11과·심사12과·심사13과·심사14과·심사15과)
--------------	---

별표 12 중 총계 “2,699”를 “2,8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99”를 “2,84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03”을 “104”로, 출입국관리주사 “460”을 “481”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27”을 “77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720”을 “767”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42”를 “571”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2,699”를 “2,8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2,699”를 “2,84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사무관 “113”을 “114”로, 출입국관리주사 “449”를 “470”으로, 출입국관리주사보 “727”을 “77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720”을 “767”로, 출입국관리서기보 “542”를 “571”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송환집행과	19명 (5급 1명, 6급 6명, 7급 6명, 8급 6명)	2029년 6월 30일까지
-----------------------	-------------------------------------	----------------

별표 13 제2호나목에 15) 및 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항공기 승객 출입국심사(출입국·외국인청)	84명 (6급 7명, 7급 22명, 8급 32명, 9급 23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16) 자동출입국심사 관리 (출입국 · 외국인청)	28명 (6급 5명, 7급 9명, 8급 8명, 9급 6명)	2028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출국대기실운영팀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난민회부심사팀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팀의 존속기한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난민회부심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입국재심1과장 및 입국재심2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법무부령 제10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6년 8월 1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8월 1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2의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사무관 1명)은 202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고, 2029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2의 2의 정원 1명(출입국관리주사 1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⑪ ~ ㉔ (생략) ㉕ 출국대기실운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2. (생략) <신설>	⑪ ~ ㉔ (현행과 같음) ㉕ <u>송환집행과장과 출국대기실 운영팀장-----.</u> 1. 2. (현행과 같음) ㉗ <u>난민회부심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u> 1. <u>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2. <u>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u> 3. <u>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대기장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4. <u>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급식, 피복 등 기본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u> 5. <u>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통계 관리,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난민법」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에 관한 사항</u>
---	---

신·구정원대비표

.	.	.	
---	---	---	--

[별표 1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9</u>	<u>2,840</u>	+141
일반직 계	<u>2,699</u>	<u>2,840</u>	+141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03</u>	<u>104</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60</u>	<u>481</u>	+21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727</u>	<u>770</u>	+43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720</u>	<u>767</u>	+47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42</u>	<u>571</u>	+29
.	.	.	

[별표 12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관련)

.	.	.	
---	---	---	--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699</u>	<u>2,840</u>	+141
일반직 계	<u>2,699</u>	<u>2,840</u>	+141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113</u>	<u>114</u>	+1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449</u>	<u>470</u>	+21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727</u>	<u>770</u>	+43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720</u>	<u>767</u>	+47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542</u>	<u>571</u>	+29
·	·	·	